|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|
| --- |
| 새 마 을 과 |

#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 미 시

#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의 안 번 호 | |
|---|---|

제출연월일 : 2026. 10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수 확대 및 위촉 대상 추가를 통한 위원회의 전문성과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3조의2)

・ (당초) 2026년 12월 31일 → (변경) 2031년 12월 31일

나. 위원 수 확대 등 위원회 관련 정비(안 제4조, 제6조)

다. 기금관리공무원 현행화(안 제4조, 제10조)

라. 용어 및 문구 등 정비(안 제3조, 제10조, 제11조, 제14조, 제18조, 제20조)

## 3. 조례안 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,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　　타

- 2026년 제2회 구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완료('26.4.27.)
-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조례 제 호

#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”를 “「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”로 한다.

제3조의2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31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본문 중 “7명”을 “8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새마을진흥팀장”을 “새마을봉사팀장”으로 한다.

5.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

6. 교육·장학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제6조제2항 중 “대행한다”를 “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제2호 중 “새마을진흥팀장”을 “새마을봉사팀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비치하고”를 “갖추어 두고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14조제2호 중 “새마을 지도자”를 “새마을지도자”로 한다.

제18조제2항제1호 중 “상훈법”을 “「상훈법」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및 제4호 중 “지도자”를 각각 “새마을지도자”로 한다.

제20조제1항제1호 중 “지도자”를 “새마을지도자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제3조(기금의 운용관리)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, 구미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·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·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. | 제3조(기금의 운용관리) ① ----------「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----------. |
| ② ~ ④ (생 략) |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|
| 제3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| 제3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----- 2031년 12월 31일 ----------. |
| 제4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(생 략) | 제4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|
|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 ② ---------- 8명 ----------. |

| | |
|---|---|
|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| ③ ----------. |
| 1. ~ 4. (생 략) | 1. ~ 4. (현행과 같음) |
| <신 설> | 5.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|
| <신 설> | 6. 교육·장학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|
| ④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새마을과장이 되고, 서기는 새마을진흥팀장이 된다. | ④ ---- 새마을봉사팀장------. |
| ⑤ (생 략) | ⑤ (현행과 같음) |
| 제6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(생략) | 제6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(현행과 같음) |
|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| ② ----------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|

| | |
|---|---|
| 제10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기금의 효율적 운용·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<br>1. (생 략)<br>2. 기금출납원 : 새마을진흥팀장<br>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 | 제10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 ----------.<br>1. (현행과 같음)<br>2. --------- 새마을봉사팀장<br>② ---------- 갖추어 두고 ----------. |
| 제11조(기금의 결산) ① (생 략)<br>②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br>1. ~ 3. (생 략) | 제11조(기금의 결산) ① (현행과 같음)<br>② ---------- 각 호----.<br>1. ~ 3. (현행과 같음) |
| 제14조(장학금 지급대상 자격요건) 새마을운동에 연속 2년 이상 봉사한 구미시 새마을 남·여지도자(직장·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 및 새마을문고 지도자를 포함한다. 이하 “새마을지도자”라 한다)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유공자 장학금 지급 대상은 경력 | 제14조(장학금 지급대상 자격요건) ----------. ---------- |

| | |
|---|---|
| 2년 이상을 요하지 아니한다. | ----------. |
| 1. (생 략) | 1. (현행과 같음) |
| 2.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 지도자나 현직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또는 전·현직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자의 자녀 | 2. ---------- 새마을지도자---------- |
| 3. (생 략) | 3. (현행과 같음) |
| 제18조(선정기준) ① (생 략) | 제18조(선정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 |
| ②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장학생을 선정하고, 선정된 자 중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이 되면 우등생, 특기생 순으로 한다. | ② ----------. |
| 1. 최근 6년 이내 상훈법에 의한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경우 상순위 수상자 순 | 1. ---------- 「상훈법」---------- 새마을지도자---------- |
| 2.·3. (생 략) | 2.·3. (현행과 같음) |
| 4. 최근 3년 이내 새마을 유공표창(시 단위 이상 기관장)을 받은 지도자의 경우 상순위 수상자의 순 | 4. ---------- 새마을지도자---------- |

| | |
|---|---|
| 5. (생 략) | 5. (현행과 같음) |
| ③·④ (생 략) | ③·④ (현행과 같음) |
| 제20조(지급정지) ①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. | 제20조(지급정지) ① ----------.<br>1. ---------- 새마을지도자----------<br>2. ~ 5. (현행과 같음) |
| 1.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의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,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지도자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| |
| 2. ~ 5. (생 략) | |
| ② (생 략) | ② (현행과 같음) |

# 관계법령

## □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

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
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 □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

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생 략

| 소 관 부 서 | | 새 마 을 과 |
|---|---|---|
| 입<br>안<br>자 | 과 장 | 조 희 태 |
| | 팀 장 | 배 영 아 |
| | 담 당 자 | 박 준 영<br>(480-6804) |